

<붙임 2.>

급경사지 모니터링 계측기 구매 및 설치 과업 지시서

2024. 04.



특수
법인 **한국급경사지안전협회**
KOREA SLOPE SAFETY ASSOCIATION

목 차

I . 과업 개요	1
1. 일반 사항	1
2. 배경 및 필요성	1
3. 목 적	2
4. 추진 근거	2
5. 주요 내용	2
6. 추진 일정	3
II . 과업 범위 및 내용	4
1. 급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상시모니터링 제품 설치위치 선정 ..	4
2.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제품 설치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	4
III . 과업 수행 일반지침	5
1. 수행 기준	5
2. 수행 조건	6
3. 행정 사항	6
<별표 1> 검수 대상지	9

1. 일반 사항

- 과업명 : 급경사지 모니터링 계측기 구매 및 설치
- 과업기간 : 계약일로부터 2024년 10월 05일까지
- 과업금액 : 금일천삼백칠십오만원(13,750,000원, VAT포함)

2. 배경 및 필요성

- 기상이변에 의한 태풍 및 국지성 집중호우 발생빈도가 증가하고, 이로 인한 급경사지 낙석·붕괴가 지속적으로 발생
- 재해위험지역에 대한 “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체계 구축사업”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이 지체되고 있거나 조치가 이루어지 않는 관리 사각지대 노출
 - 사전 붕괴 징후 감시, 예·경보 등 선제적 예방조치 필요
- 행정안전부에서 추진중인 「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체계 구축사업」의 경우 예산이 3억(국비50%, 지방비50%)으로 소규모 급경사지에는 적용이 어려운 실정
- 「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체계 구축사업」 준공 이후 담당공무원의 인사발령 및 전문성 부족 등의 원인으로 상시계측관리시스템의 미작동 사례 발생
- 급경사지의 토지소유주가 사유지일 경우 구조적 대책 수립의 행정 절차가 복잡하고, 주민들의 민원, 구조적 대책수립에 대한 근거 미흡 등으로 담당자의 의사결정 지연

3. 목 적

- 행정안전부 「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체계 구축사업」의 예산보다 적은 예산으로 '기간운영형 상시계측'을 수행하여 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의 구조적 대책수립을 위한 근거자료 마련
- 한시적인 상시계측관리 시스템을 운용하여 해빙기 및 집중호우 등 불안정 요인에 의한 대상지의 안정성 여부 확인
- 지반의 이상 거동 발생 시 대책 수립을 위한 신속한 의사결정 도구로 활용

4. 추진 근거

- 행정안전부 「급경사지 재해예방에 관한 법률」 제8조 제3항
- 행정안전부 「급경사지 상시계측관리 체계 구축 가이드라인」
- 행정안전부고시 제2019-84호 「계측비용과 계측기기의 성능검사 수수료에 대한 산정기준」

5. 주요 내용

- 과업 대상
 - 급경사지 상시 모니터링 용역 대상지 1개소 <별표 1>을 참조
- 과업 범위
 - 급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모니터링 계측기 설치위치 선정
 - 상시 모니터링을 위한 제품 설치 및 운영프로그램 연계 및 기술지원

6. 추진 일정

구 분	추진 일정(약 6개월)					
	5월	6월	7월	8월	9월	10월
1. 급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상시 모니터링 제품 설치위치 선정						
2.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제품 설치						
3. 운영프로그램 연계						
4.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						
5. 최종보고서 작성						

II 과업 범위 및 내용

1. 급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상시모니터링 제품 설치위치 선정

- 현장조사를 통해 급경사지의 위험요소(붕괴, 낙석 등) 및 피해요소(사람, 도로 등) 등 파악 및 설계 적용 여부 검토
- 계측기기의 장비규격 및 성능은 행정안전부 '계측기기 성능검사 기준에 관한 규정'을 준수
- 급경사지 특성을 고려한 지반변형, 붕괴 등을 감지할 수 있는 계측기 위치, 종류, 배열, 방식, 수량 등의 기술적 적합성
 - * 지반의 붕괴 및 낙석 등을 충분히 감지할 수 있도록 계측기 종류 및 수량 등 결정
- 전원 및 통신장비 등의 안정성 여부
- 계측기기 설계도면 작성

2. 상시모니터링을 위한 제품 설치 및 자동화 시스템 구축

- 운영시스템 그래프 표출
- 상황단계별 관계자(공무원, 협회, 업체)문자 전송 기능 탑재
 - 「급경사지 붕괴위험지역 주민대피 관리기준」에 따른 문자 알림 서비스 구축 여부
- 전력공급, 계측DB 송수신 장비, 보호시설 및 각종 부대시설의 안정성 여부
- 계측데이터 Calibration 및 적정성 검토
- 정기점검 및 긴급점검 지원
- 월간보고서 작성 지원

Ⅲ 과업 수행 일반지침

1. 수행 기준

- 관련 법령 및 제반 규정과 제안요청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이나 문구, 용어 해석에 대한 의견을 달리하는 경우 또는 과업수행상 문제점 및 중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상호협의를 따름
- 본 과업 수행에 적용하는 자료는 근거가 명확하고 객관적으로 인정되는 자료를 적용하여야 함
- 본 과업 제안서에 기재된 기술자는 관련 자격사항이 반드시 포함되어야 하고, 참여자를 교체할 경우 발주처와 사전 협의
- 본 과업을 수행함에 있어 과업내용 및 과업기간 변경이나 범위를 조정할 경우에는 과업수행자와 발주처간 상호 협의하여 결정
- 본 제안서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도 성공적인 과업 수행을 위해 발주처 또는 과업수행자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은 상호 합의하여 추가할 수 있고, 이에 소요되는 경미한 경비는 과업수행자가 부담
- 본 과업 수행과정에서 계약 당시 예상하지 못한 사항으로서 과업수행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발주처 및 전문가가 인정하는 추가 과업이 발생한 경우 계약금액 및 계약기간 등 계약내용을 변경할 수 있음
- 본 과업 수행 중 부득이한 사유(천재지변, 토지소유주 미동의 등)로 당초 공정대로 수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발주처의 사전 협의를 통해 대상지 변경 또는 과업기간을 연장하거나 조정할 수 있음
- 하자보수 기간은 납품검수 후 1년으로 하고, 하자보수 기간 내 자체 결함에 의한 하자가 발생하여 발주자가 하자보수를 요청한 경우, 수급자가 하자를 보수 실시

2. 수행 조건

- 과업수행자는 과업 진행 중 또는 완료 후 본 과업에 관한 사항은 보안규정 준수
- 본 과업수행 목적으로 사용한 각종 기준과 모든 공식자료 및 통계는 최근 자료를 이용하여야 하며 서면으로 그 근거를 제시해야 함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에 관련된 모든 보고서의 조사 분석된 사항과 정리된 자료의 출처, 년도, 참고사항과 분석자료 등 이에 관련된 서류를 발주처에 제시해야 함
- 과업수행 중 발주처와 과업수행자간 의견의 차이가 있을 때에는 양자 상호 협의를 통하여 해결하여야 함
- 보고서 작성은 편집방법 등 발주처와 사전 협의한 후 시행해야 함

3. 행정 사항

가. 성과품 납품

- 보고서 작성은 한글, 아라비아 숫자, 미터법을 원칙으로 하고, 한문 또는 영문 등 표기가 필요한 경우에는 한글과 병기하여 수록
- 용역수행자는 납품목록 및 주요 성과품을 제출하기 전에 각 1부를 제출하여 확인을 받아야 하고, 확인과정에서 지적되는 사항은 즉시 수정하여 최종 성과품을 제출하여야 함
- 본 과업과 관련하여 취득한 각종 자료는 보고서의 부록에 포함하거나 별도로 제출하여야 함
- 최종 보고서를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야 함
 - 최종보고서 제출 : 보고서 3부 및 저장매체 2개

나. 위반행위에 대한 조치

- 다음 행위 발생시 과업수행 상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과업수행자의 계약 위반행위로 간주하여 관계 규정에 따라 조치할 수 있음
 - 제반 지시사항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
 - 과업기간 내에 과업을 완료할 능력이 없다고 판단될 경우
 - 과업수행 중 부주의 등으로 중대한 실수가 발생 되었을 경우

다. 과업수행 결과에 대한 보완 의무

- 과업 완료 후 1년 이내 하자가 발생한 경우, 발주처와 협의 후 내용을 수정·보완하여야 함
- 과업수행자는 성과품 납품 후에도 발주처에서 자문을 요청할 경우 이에 성실히 응하여야 하고, 각종 행정절차 등의 이행이 완료되어야 본 과업이 완료된 것으로 봄

라. 하자책임관계

- 과업수행자는 최종보고서를 제출한 과업보고서상의 하자로 인해 발주처에 손실을 초래하였을 때는 이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고, 손해배상을 하여야 함

마. 하도급 사항

- 하도급은 원칙적으로 불허하나, 필요시 발주처와 협의하여 추진

바. 보안사항

- 과업수행자는 본 과업을 추진하면서 얻게 되는 내용은 보안 유지하는 등 보안상 결함이 없도록 하여야 하고, 과업 참여자는 과업 착수 전에

보안각서를 제출해야 함

- 모든 성과품은 발주처와 사전 협의없이 과업수행자가 임의로 복사 또는 외부로 유출 시켜서는 안 되고, 타목적용 위해 사용할 수 없음
- 발주처는 과업수행자가 보안사항을 위반하였을 경우에는 시정요구 또는 참여자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, 보안사항 불이행으로 발생하는 모든 책임은 과업수행자가 부담함
- 과업수행에 필요한 사항이 정부 및 관계기관의 보안과 관련되는 자료는 해당기관과 협의하여 수행하여야 함
- 본 과업 관련 자료 외부누설과 보안사항 불이행 등으로 사회적인 물의 또는 민원 발생 시 과업수행자가 모든 사항의 책임 감수

